##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882 발의연월일: 2025. 4. 16.

발 의 자:문대림・허성무・윤준병

김영호 · 김한규 · 김 윤

서삼석 · 송옥주 · 이워택

안도걸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 대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,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시 이에 대응하는 벌칙 또는 처벌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 확보나 형평성 차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또한, 「형법」, 「공인노무사법」, 「건축사법」 등 비밀유지 의무를 수반하는 직무와 관련된 유사법에 비밀 엄수 조항에 수반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.

이에 법무사들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74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4조의2(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) 제2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76조 본문 중 "제73조"를 "제73조, 제74조의2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74조의2(비밀누설 금지의무 위
	반) 제2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
	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
	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
	<u>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</u>
	금에 처한다.
제76조(양벌규정) 법무사법인이나	제76조(양벌규정)
법무사법인(유한)의 구성원 또	
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	
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	
조제1항, <u>제73조</u> 또는 제75조의	<u>제73</u> 조, 제74조의 <u>2</u>
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	
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인	
이나 법무사법인(유한)에도 각	
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	
다. 다만, 법인이 그 위반행위	
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	
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	
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	
그러하지 아니하다.	